

부록 1

법령심사 체크리스트



[법령심사 체크리스트]

1. 심사 전 단계

- 소관 부처의 입법계획을 숙지하고, 진행상황을 점검한다.
- 소관 부처의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, 입안 지원 및 이견 조정 등을 한다.
- 공약·국정과제, 하위법령 특별정비, 하위법령 제때 마련 법안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의 경우 사전심사를 적극 실시한다.
- 사전심사 시 중요 사항은 미리 보고하고, 지침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다.
- 법령안의 심사의뢰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, 심사를 준비한다.

2. 심사 접수 단계

- 정부입법시스템 외에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도 심사의뢰 했는지 확인한다.
- 개정이유서 등 누락된 첨부문서가 없는지 확인한다.
- 사전절차(입법예고, 부처협의, 국가인권위원회 사전통지,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 영향평가 등)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한다.
-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첨부문서가 누락된 경우 등에는 반려·철회 처리한다.
- 시행일, 심사소요기간 등을 검토한 후 심사일정을 설계한다.

3. 법안 심사 단계

가. 법안 내용 검토

- 해당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한 후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다.
-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(평등의 원칙, 비례의 원칙, 신뢰보호의 원칙 등)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한다.

※ 「법령 입안·심사 기준」(2023년판) 제1편제3장 “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”(29~46쪽)참고.

<p>〈신 설〉</p>		<p>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.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</p>
--------------	--	--

위 사례의 경우 개정문은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개정하고, 각 목을 신설하는 개정문과 법률 제10719호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개정문을 함께 작성한다.

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.
제13조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제83조제1호·제5호·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나.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.
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제83조제1호·제5호·제8호·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나.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·시행한 경우

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이미 개정·시행한 경우, 당초 개정 조문의 시행일 도래 시 ① 당초 개정 시 개정 전 조문과 ② 추후 개정·시행된 조문 중 어느 것을 현행 조문으로 보아 당초 개정 조문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.

가. 사례 1 : 「재외국민등록법」

개정 전 (법률 제6057호)	개정 1 (법률 제8435호 2007. 5. 17. 공포, 2008. 1. 1. 시행)	개정 2(알법) (법률 제8682호 2007. 12. 14. 공포·시행)
제3조(등록공관 및 등록사항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본적</u> (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 에 한한다)	제3조(등록공관 및 등록사항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등록기준지</u> (가족관계등록 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)	제3조(등록공관 및 등록사항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본적</u> (본적이 있는 자의 경 우만 해당한다)
	〈개정문〉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	〈개정문〉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사례 2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개정 전 (법률 제9299호)	개정 1 (법률 제9847호 2009. 12. 29. 공포, 2010. 12. 30. 시행)	개정 2(알법) (법률 제10347호 2010. 6. 8. 공포·시행)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가·나. (생략) 다.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 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<u>전염병</u> 확 산 등으로 인한 피해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(생략) 가·나. (생략) 다. ----- ----- <u>감염병</u> -- -----	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. 1. (생략) 가·나. (생략) 다. 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<u>전염병</u> 확 산 등으로 인한 피해
	〈개정문〉 제3조제1호다목 중 “전염병” 을 “감염병”으로 한다.	〈개정문〉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사례 3 : 「낙농진흥법」

개정 전	개정 1 (법률 제9432호 2009. 2. 6. 공포, 2009.8.7 시행)	개정 2(알법) (법률 제9660호 2009. 5. 8. 공포·시행)
제8조(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) ①(생략) ②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기타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	제8조(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) ①(생략) ②----- ----- 1.~3. (생략) 4. 「 식품위생법 」 제37조에 따라 ----- -----	제8조(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) ①(생략)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「 축산물가공처리법 」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
	〈개정문〉 제8조제2항제4호 중 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”를 “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라 ”로 한다.	〈개정문〉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⇒ 현행 조문의 판단

법령의 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공포 당시의 개정대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개정법령의 현행 조문은 시행일 당시로 판단해야 한다. 다만, 사례 3과 같이 시행일에 개정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오류로 보아 신속히 보충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.

- 주요 법안의 경우 외국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적극 참고한다.
- 인용 조문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한다.
- 조항 신설·이동·삭제, 약칭 신설·변경·이동 등의 경우 다른 규정을 고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한다.
-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는지 조문별로 검토한다.
- 제정안·전부개정안, 제명 변경, 조문 이동 등의 경우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.
- 전부개정안의 경우 종전 부칙 중 살릴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.

나. 심사 방법 및 절차

- 심사방법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, 소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되 적절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.
-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에 참고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.
-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요 사항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하도록 하고, 진행상황을 확인한다.
- 심사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수정된 경우 수정심사의뢰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.
- 심사 및 결재 진행상황을 부처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한다.
- 심사과정에서 법령정비사항을 발굴한 경우 법령정비과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인 경우 내용 심사가 끝난 후 검토를 요청한다.
-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.
- 결재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소관부처·관계부처 의견 확인을 거쳐 반영한다.
- 결재과정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 결재자에게 중요 사항을 보고한다.
- 결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창의지식광장 등에 게재하여 공유한다.
- 총리령·부령·대통령훈령·총리훈령안은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심사안을 송부 한다.

다. 심사안 등 작성

- 법령별 작성 양식에 맞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.
 - ※ 법률·대통령령안: 의결주문, 제안이유, 주요내용, 주요토의과제, 참고사항
 - ※ 총리령·부령·대통령훈령·총리훈령안: 제·개정이유, 주요내용, 참고사항
- 제안이유(제·개정이유) 및 주요내용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작성한다.
 - ※ 제안이유(제·개정이유) 중 법률 공포번호·공포일·시행일이 맞는지 확인
 - “~ 등의 내용으로 「○○법」이 개정(법률 제0000호, 2013. 0. 0. 공포, 2014. 0. 0. 시행)됨에 따라”
 - “「○○법」이 개정(법률 제0000호, 2013. 0. 0. 공포, 2014. 0. 0. 시행)되어 ~함에 따라” 등

- ※ 제안이유(제·개정이유)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
 - “~하기 위하여(개정목적) ~하고(개정내용), ~하기 위하여 ~하며,”
 - “~하여(개정내용) ~하게 하고(개정효과), ~하여 ~하게 하며,” 등
- ※ 주요내용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도입배경, 정책내용, 기대효과 서술(내용이 간단한 경우 등에는 하나로 작성 가능)
- ※ 제안이유(제·개정이유) 및 주요내용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풀어쓰기

○ 참고사항 중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.

- ※ 입법예고 기간은 부처 홈페이지보다는 관보,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목록 또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법예고 목록에서 확인해야 정확
- ※ 규제를 신설·강화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

○ 개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.

- ※ 개정문은 원칙적으로 조 단위로 작성
- ※ 개정문은 최소 단위까지(각 호 외의 부분, 본문/단서, 전단/후단) 작성

○ 신규조문대비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.

- ※ 수작업보다는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여 신규조문대비표 자동 생성
- ※ 개정문과 신규조문대비표 일치 여부 확인
- ※ 현행 조문은 종이 법령집과 일치 여부 확인
- ※ 개정부분은 현행과 개정안의 밑줄 위치가 같은지 확인
- ※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

○ 법령안에 오타자가 없는지 어문규정에 맞는지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.

- ※ 조항호목 등 순서가 맞는지, 쪽번호가 맞는지, 페이지 누락 여부 등 확인

○ 심사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경과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작성한다.

○ 결재안에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내용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결재를 상신한다.

- ※ 법령 종류에 따라 해당 결재표지 사용
- ※ 부칙검토표, 심사경과보고서, 접수안, 개정이유서, 해당 법령(모든 부칙 포함),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관보자료 첨부
- ※ 다른 법령 인용 시 인용 조문 첨부
- ※ 전부개정의 경우 소관부처에 요청하여 신규조문비교표 별도 작성 첨부
- ※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

4. 심사 후 단계

- 차관회의·국무회의 전에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한다.
- 타부처가 이견을 제시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 후 소관부처를 통하여 원안대로 협의할 것을 유도하고, 타부처 이견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

차관회의 최종상정안	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되기 전이어서 법안을 수정하여 접수할 수 있는 경우
차관회의 수정원안	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회의 개최 전에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
국무회의 수정안	국무회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회의 개최 전에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
차관/국무회의 수정사항	차관/국무회의에서 법안 수정 관련 논의를 거쳐 수정의결 후 법안을 수정하는 경우

- 차관회의·국무회의 의결결과를 확인한다.
-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 소관 부처를 통하여 국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관 부처를 지원한다.
- 하위법령안의 경우 언제 공포됐는지,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.
-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인 경우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됐는지 확인한다.